

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2. 2. 10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. 28. 강남구청장(지역경제과장)
- 나. 상정의결
 -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2. 2. 11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은승일)

- 가. 제안이유
 - 2022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출연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
 - 출연근거 : 서울신용보증재단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 - 출연내용 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
 - 출 연 금 : 3,000백만원

○ 필요성

- 경기침체 가속화 방지 :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기업의 휴·폐업 방지
-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한계 극복 :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정책 수혜효과 확대
- 향후 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증 여력 재원 확보

다. 참고사항

○ 강남구 출연 현황 및 보증잔액

- 1차 출연 : 2008. 9. 29. (500백만원, 보증한도 5,000백만원)
- 2차 출연 : 2009. 1. 22. (400백만원, 보증한도 4,000백만원)
- 3차 출연 : 2020. 2. 12. (600백만원, 보증한도 6,000백만원)
- 4차 출연 : 2021. 6. 14. (2,600백만원, 보증한도 32,000백만원)

※ 보증잔액 : 6,244백만원(2022. 1. 17. 현재)

○ 출연사업 개요

-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: 3,000백만원 출연
 - 보증금액 : 36,000백만원(출연금의 12배)
 - 보증대상 :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강남구 관내 사업체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소상공인
 - 보증조건 : 업체당 최대 1억원,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, 시중금리(신용등급별 상이)
- 자치구 특별보증 혜택
 - 저렴한 보증료 : 용자금액의 0.8% (기존 보증료 최대 2.0%)
 - 높은 보증비율 : 용자금액의 100% (기존 보증비율 85%)
 -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: 소액심사신용평가 적용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

언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특히 출연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는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²⁾에 따라 설립되었고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³⁾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보임. 또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⁴⁾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계정에서 3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⁵⁾하기 위하여 2022.1.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.

- 한편,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을 위한 지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1항⁶⁾ 각 호의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9조(설립)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(發起人)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단은 시·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.

3)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별보증지원)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4)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

5)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(생략)

2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

6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.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정책사업(재무활동) 15,984,563천원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는 바 10분의 2(약32억)이하인 30억원의 출연은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 출연금 확보는 지출계획상 예치금(15,984,563천원) 중 30억원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<기금운용계획 변경안>

구분	당초	변경	증감내역	비고
출연금(306-01)	0	3,000	3,000	단위: 백만원
예치금(602-01)	15,984	12,984	△3,000	

○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차에 걸쳐 총 41억원을 출연하고 2022.1. 기준, 보증한도 587억원 중 현재 보증잔여한도는 62억4천4백만원 임.

<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>

구분	협약체결	기금출연	출연금액	보증한도	비고
제1차	2008.9.19.(금)	2008.9.29.(월)	5억원	50억원	(Track1) -보증한도: 출연금의 10배 -보증비율: 85% -보증료율: 1.0% -잔여보증한도: 한도소멸
제2차	2009.1.20.(화)	2009.1.22.(목)	4억원	40억원	
제3차	2020.2.10.(월)	2020.2.12.(수)	6억원	90억원	(Track2) -보증한도: 출연금의 15배 -보증비율: 100% -보증료율: 0.8% -잔여보증한도: 20백만원
제4차	2021.6.14.(월)	2021.6.14.(월)	10억원	120억원	(Track2) -보증한도: 출연금의 12배 -보증비율: 100% -보증료율: 0.8% -잔여보증한도: 6,179백만원
			16억원	200억원	(소상공인무이자용자 1) -보증한도: 출연금의 12.5배 -보증비율: 100% -보증료율: 없음 -잔여보증한도: 한도소멸
				87억원	(소상공인무이자용자 2) -보증한도: 출연금의 12.5배

시하여야 한다.

					-보증비율: 100% -보증료율: 0.5% -잔여보증한도: 45백만원
합 계			41억원	587억원	잔여보증한도: 6,244백만원 (2022.1.17.기준)

- 30억원 추가 출연시에는 보증한도가 출연금의 12배인 360억 규모로 증가하여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보증수요에 대비한 보증 여력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보증대상, 보증조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. 끝.

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. 28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지역경제과

1. 제안이유

2022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출연개요

가. 출연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다. 출연내용 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

라. 출연금 : 3,000백만원

마. 필요성

- 경기침체 가속화 방지 :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기업의 휴·폐업 방지
-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한계 극복 :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

자금난 해소로 정책 수혜효과 확대

- 향후 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증 여력 재원 확보

3. 참고사항

가. 강남구 출연 현황 및 보증잔액

- 1차 출연 : 2008. 9. 29. (500백만원, 보증한도 5,000백만원)
- 2차 출연 : 2009. 1. 22. (400백만원, 보증한도 4,000백만원)
- 3차 출연 : 2020. 2. 12. (600백만원, 보증한도 9,000백만원)
- 4차 출연 : 2021. 6. 14. (2,600백만원, 보증한도 32,000백만원)
- ※ 보증잔액 : 6,244백만원(2022. 1. 17. 현재)

나. 출연사업 개요

-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: 3,000백만원 출연
 - 보증금액 : 36,000백만원(출연금의 12배)
 - 보증대상 :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강남구 관내 사업체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소상공인
 - 보증조건 : 업체당 최대 1억원,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, 시중금리(신용등급별 상이)
- 자치구 특별보증 혜택
 - 저렴한 보증료 : 용자금액의 0.8% (기존 보증료 최대 2.0%)
 - 높은 보증비율 : 용자금액의 100% (기존 보증비율 85%)
 -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: 소액심사신용평가 적용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■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 3. 기업의 출연금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(기금의 용도)

-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1.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 - 1의2. 중소기업 용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 2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

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보증 지원)

-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